

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
지회·지부 선거관리규정
신·구조문대비표



KOREA SINGERS
ASSOCIATION

사단
법인 **대한가수협회**
KOREA SINGERS ASSOCIATION

(사)대한가수협회 지회·지부 선거관리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2013년 09월 26일 제정.
 2020년 04월 03일 개정.
 2021년 12월 28일 개정.
 2025년 00월 00일 개정.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장 총 칙	제1장 총 칙	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<신 설>의 지회·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제8조(지회·지부 운영 및 임원선출)에 따라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(이하 ‘본회’ 라 한다)-<삭 제> 지회·지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-----.	▶ 규정의 구체적 목적성 부여 및 간결화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지회·지부장 및 임원 <신 설> 선출을 위한 선거에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본-----지회·지부 임원(이하 ‘임원’ 이라 한다.)-----.	▶ 용어 통일
제2장 임원선출	제2장 임원선출	
제3조(선거권 및 피선거권) ① 회원 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및 지회·지부 운영규정<신 설> 제2장(회원)을 충족한 지회·지부 회원<신 설>은 선거권을 가진다. ② 제1항의 지회·지부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. 1. 선거일 전 30일까지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 2. 지회·지부 운영규정 제9조(회원의 의무)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 3. 지회·지부 운영규정 제11조(회원의 징계)의 처분을 받거나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 가. (생 략) 나.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선거권) ①<삭 제> -----<삭 제> -----(이하 ‘운영규정’ 이라 한다.)-----에 의한 -----(이하 ‘회원’ 이라 한다.)-----. ②<삭 제>-----<삭 제>----- 각 호의 하나에 ----- 1. 선거공고일 기준 ----- 2. <삭 제>---- 제10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 혹은 상실된 회원 <삭 제>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	▶ 선거권, 피선거권 구분 ▶ 용어 통일 ▶ 중복표현 삭제 ▶ 규정 개정 ▶ 대상 명확화

<p>③ 임원선출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회·지부 운영규정 제13조(임원의 자격)에 해당하는 자 2. 본회 정관 제16조(회원의 의무) 및 지회·지부 운영규정 제7조(자격), 제9조(회원의 의무)에 해당하는 자 3. 본회 및 지회·지부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선거권, 피선거권 구분에 의한 조항 이동</p>
<p><신 설></p>	<p>제4조(피선거권)</p> <p>① 임원선출 입후보자는 해당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회·지부의 장은 본회의 회원자격을 1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한다. 2. 지회·지부의 운영위원과 감사는 본회의 회원자격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한다. <p>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선거공고일 기준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 2.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회원 3.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 4. 미성년자 	
<p>제4조(선거관리위원회 설치)</p> <p>① 지회·지부는 선거 및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선관위' 라 하며, 선관위 구성원을 '선관위원' 이라 한다)를 두며,</p> <p><신 설></p> <p>사무소는 지회·지부 사무국 내에 둔다.</p> <p>②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)</p> <p>①----- 선거의 ----- -----<삭 제></p> <p>선거관리위원(이하 '선관위원' 이라 한다.)을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, 선거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면직한다.</p> <p><삭 제></p> <p>② <삭 제> 제1항의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이 때, 사무국장은 선관위원이 구성되면 중앙회 사무처에 그 명단을 전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회·지부의 사무국장과 감사는 당연직 선관위원으로 위촉하며, 이외의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위촉한다. 2. 제1항의 상단 직위 중 일부가 공석일 경우 다른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이 위촉된다. 	<p>▶조 체하</p> <p>▶중복내용 통합</p> <p>▶분임자 구체적 명시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3. 제1항의 상단의 직위중 전부가 공석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선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③ 각 선관위원은 동등한 위치에 선거사무를 관장하며, 선관위원은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</p>	
<p>제5조(선관위의 구성)</p> <p>① 선관위원은 지회·지부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5인 이내의 자를 지회·지부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② 선관위원은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.</p> <p>③ 선거관리위원장이하, '선관위원장' 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④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⑤ 선관위원장의 결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선출하여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현행 6조와 병합 후 개정안 6조로 병합</p>
<p>제6조(선관위의 소집)</p> <p>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선관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선관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선거관리회의 소집 및 의결)</p> <p><삭 제></p> <p>① 선거관리회의(이하 '선관회의' 라 한다)는 반드시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전자적 형태의 회의를 진행할 경우, 일시 및 상세 회의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선관회의는 선관위원 전체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▶ 규정 개정</p> <p>▶ 규정 개정</p> <p>▶ 의무사항 명시</p>
<p>제7조(선관위 개의 및 의결정족수)</p> <p>선관위는 선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선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<삭 제></p>	<p>▶ 현행 6조와 병합 후 개정안 6조로 병합</p>
<p>제8조(선관위 사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. 선거 공고<신 설></p> <p>2. 입후보자 등록 시퇴 취소 접수 및 공고<신 설></p> <p>3. 제11조(선거인명부)에 의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</p> <p>4. 제23조(선거운동)에 의거 불법,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제재</p>	<p>제7조(선관위원의 직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및 진행과 관리감독</p> <p>2. -----<삭 제> 및 관리감독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선관위원 사무 구체화</p>

<p>5. <u>투·개표 관리 및 검표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<u>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·처분 및 결정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 <u>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지회·지부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지회·지부 사무국은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,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	
<p>제9조(선관위 경비)</p> <p>① <u>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<신설> 명예직(무보수)으로 한다.</u></p> <p><u>다만, 여비 등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선거경비)</p> <p><삭제> <u>선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<u>단, 필요 시 지회·지부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실비에 관한 지급주체 범위 구체화</p>
<p>제10조(선관위 해산)</p> <p><u>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회·지부의 운영위원회와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해산한다. 단,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	<p>▶ 개정안 5조 병합</p>
<p>제11조(선거인명부)</p> <p>① <u>선관위는 본 규정 제3조(선거권 및 피선거권)에 의거하여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기재하며,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,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선관위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 단,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은 비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④ <u>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본인 정보의 누락, 오기 등 흠결이 있는 경우,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선관위는 제4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,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.</u></p>	<p>제9조(선거인 명부)</p> <p>① <u>선관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유효회원의 명단을 선거일 5일 전까지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고, 선거일 3일 전까지 확정한다.</u></p> <p>② <삭제></p> <p>③ <삭제></p> <p>② ----- 이상이 있는 경우, 그 즉시 선관위원에게 -----.</p> <p>③ 선관위원은 제2항의 이의를 ----- ----- 즉시 -----.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날짜 명시</p>

<p>제12조(후보자 등록)</p> <p>① <u>임원 입후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(소정양식) 2. 입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(소정양식) 3. 입후보자 이력서 4. 입후보자 서약서(소정양식) 5. 입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6. 제14조(후보자 추천)에 의거한 추천장 7. 사진 1매(여권규격) 8. 기탁금 입금확인증(지회·지부장 입후보자) 9. 참관인 추천서(지회·지부장 입후보자) <p>② <u>입후보등록은 선관위가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후보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입후보자 등록 및 등록기간)</p> <p>① <u>임원으로 입후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선관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<삭 제></p> <p>② <u>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거인명부 확정시까지 진행한다.</u></p> <p>③ <u>입후보 등록기간 마감까지 등록입후보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관위원은 차기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, 차기 집행부 구성 시까지 전기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.</u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지회지부 임원입후보자 서류 간소화 (지회지부 요청사항)</p>
<p>제13조(후보자 등록기간)</p> <p>① <u>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. 단, 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17시까지로 하며, 선관위가 확정하여 전자적인 방법(전자문서, 전자적 형태의 서면, 이메일, 온라인 또는 모바일 투표등)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.</u></p> <p>② <u>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등록 후보자가 정수에 못 미치는 경우, 선관위는 1차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의거 연장된 등록기간 중 어느 한 임원 분야라도 등록 후보자가 정수를 충족한 경우, 선관위는 해당 분야 임원의 무투표 당선 또는 선거 개시를 선언해야 하며,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장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, 선관위는 선거를 취소해야 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개정안 10조 병합</p>

<p>④ 제3항 하단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 분야의 등록 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현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는 정관 제18조(임원의 선임)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</p> <p>⑤ 제4항의 경우 선관위는 차기 집행부의 구성 시까지 전기 임원의 임기 연장을 선언하고 일체의 선거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
<p>제14조(후보자 추천)</p> <p>① 임원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단, 같은 분야의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으며,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지회장·지부장 입후보자는 해당 지회·지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 <p>2. 운영위원 입후보자는 해당 지회·지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 <p>3. 감사 입후보자는 해당 지회·지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추천인 명단은 선관위에서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임원 입후보자 추천 조항 삭제 (지회지부 요청사항)</p>
<p>제15조(지회·지부장 입후보자 기탁금)</p> <p>① 지회장·지부장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1,000,000원(일백만원정)으로 하며,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. 단, 연임자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전항의 기탁금은 선거일 전 후보를 사퇴한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. 단, 입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망한 경우,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.</p> <p>③ 기탁금은 선거관리 등 제비용으로 사용하고, 잔여 금액은 해당 지회·지부의 일반경비에 귀속한다. <신 설></p> <p>④ 제1항의 기탁금은 선관위에서 기탁금 예치를 위해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후보자 명의로 입금하고,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한다.</p>	<p>제11조(입후보자 기탁금)</p> <p>① 임원----- 선거인명부 작성 전까지 선관위원 전체 동의로 결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기탁금은 선거 공고문에 함께 공고하며, 임원 입후보자는 이를 선관위원이 결정한 방식에 의하여 입후보 등록시까지 납부한다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단 기탁금이 0인 경우, 제비용은 해당 지회·지부의 일반경비에 충당한다.</p> <p>④<삭 제></p>	<p>▶조 제상</p> <p>▶기탁금에 관한 결정권한 및 납부방법 지회·지부 선관위원에게 일임</p>

<p>제16조(후보자 공고)</p> <p>① <u>선관위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제11조(선거인명부)에 의거하여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선관위는 후보자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입후보자 공고)</p> <p>① <u>선관위원은 임원 입후보자의 명단을 -----.</u></p> <p>② <u>선관위원은 임원 입후보자의 ----- 공개한다.</u></p> <p>③ <u>선관위원은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입후보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</u></p> <p>2. <u>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</u></p> <p>3. <u>선관위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</u></p> <p>④ <u>선관위원은 제3항에 의해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입후보자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관위원 직무 구체적 명시</p> <p>▶ 입후보 등록 취소 사항 열거</p>
<p>제17조(등록무효)</p> <p>① <u>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,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</u></p> <p>2. <u>고의적으로 등록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</u></p> <p>3. <u>정관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</u></p> <p>4. <u>선관위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</u>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현행 18조와 병합 후 개정안 13조로 이동</p>
<p>제18조(입후보 사퇴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① <u>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필 서명 또는 날인된 후보사퇴서를 <u>선관위원장에게</u>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3조(입후보 등록무효 및 사퇴)</p> <p>① <u>선관위원은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입후보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</u></p> <p>2. <u>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</u></p> <p>3. <u>선관위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</u></p> <p>② <u>선관위원은 제1항에 의해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입후보자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③ -----<삭 제> -----<u>선관위원에게</u>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입후보 등록 취소 사항 명시</p>

<p>제19조(선거일 공고) <u>선거는 정관 제18조(임원의 선임) 제5항에 의거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며, 선거일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11조(선거인명부)의 선거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단, 본회의 지침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</p>	<p>제14조(선거일 공고) <u>---- 임원의 -----</u> <u>-----전체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무국 게시판 및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 공고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불필요한 문구 삭제</p>
<p>제20조(참관인) <u>① 선관위원장은 지회·지부장에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참관인으로 위촉한다.</u> <u>② 참관인은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 추천 및 투, 개표를 참관한다.</u> <u>③ 지회·지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본회에 선거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</p>	<p>▶ 참관인 조항 삭제 (지회지부 요청사항)</p>
<p>제21조(선거공보) <u>① 제16조(후보자 공고)에 의거하여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, 성명, 기호, 경력, 정견 등을 수록하고 선관위는 이를 인쇄물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</u> <u>② 전항의 선거공보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3일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고, 선관위 승인 후 인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발송한다.</u> <u>③ 선관위는 제17조(등록무효) 제1항에 의거 등록무효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</p>	<p>▶ 제출서류 간소화에 의한 삭제</p>
<p>제22조(입후보자명 게재순서) <u>① 입후보자명의 게재순서는 선관위에서 참관인 참관하에 추천으로 결정한다.</u> <u>② 선관위는 전항의 추천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후보자 및 참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입후보자는 전항의 추천을 참관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</p>	<p>▶ 개정안 7조에 의거 중복 삭제</p>

<p>제23조(선거운동)</p> <p>① <u>선관위원 및 지회·지부 사무국 임직원은 선거에 일체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 일부터 선거 직전일 자정까지로 하며, 선거운동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</p> <p>③ <u>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다른 후보를 비방,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</u> 2. <u>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, 향응, 기부, 접대,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</u> 3. <u>특정 후보의 당선,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 도화, 인쇄물을 제작, 배포하는 행위</u> 4. <u>후보자에 대한 집필, 논평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격의 보도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</u> 5. <u>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</u> <p>④ <u>선관위원이 제1항을 위배할 경우 선관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입후보자가 제2항, 제3항을 위배할 경우 선관위는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지회·지부 사무국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5조(선거운동)</p> <p>① <u><삭 제></u></p> <p><u>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이 정한 범위와 기일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. 단,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회원에게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</u> <u><삭 제></u></p> <p>② <u>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.</u> 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불법선거운동 사례 명시</p> <p>▶ 중복 삭제</p>
---	--	--

<p>제24조(위반행위에 대한 제재)</p> <p>① <u>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의 발언과 행위 등의 위반사실과 시정여부 및 그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 관련 위반으로 신고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,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의 일일 선거 활동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후보자는 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선관위의 처분과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불문 또는 기각 2. 주위 또는 경구 3. 등록무효 또는 취소 4. 당선무효 또는 취소 5. 투표무효 또는 취소 6. 선거무효 또는 취소 <p>⑤ <u>위원회가 제4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경우,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며,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</u></p>	<p><삭 제></p>	<p>▶ 개정안 15조 통합으로 삭제</p>
<p>제25조(선거방법)</p> <p>① <u>선거는 직접, 비밀, 무기명으로 하며 현장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<u>선거권자는 지회장·지부장 감사는 각각 1표, 운영위원은 2표 이내로 행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임원 선거는 본회 정관 제18조(임원의 선임)의 본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가 투표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6조<투표 방법></p> <p><삭 제></p> <p>① <u>투표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거일 직접 참석 투표로써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투표의 시간 및 투표용지의 양식은 선관위원 합의로 결정한다.</u></p> <p>③ -----지회·지부의 장 및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, 단일 후보가 출마하거나, 선관위원 및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구체적 명시</p> <p>▶ 투표 시간 및 투표용지에 대한 선관위 권한 부여</p> <p>▶ 중복사항 삭제</p> <p>▶ 거수투표 방식 추가 (지회지부 요청사항)</p>

<p>제26조(투표소)</p> <p>① <u>선관위는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선관위는 투표개시일 7일 전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. 단,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개정안 16조 통합 이동</p>
<p>제27조(투표용지 양식)</p> <p>① <u>투표용지는 각 임원 선거별로 구별하며, 그 양식은 선관위에서 정한다.</u></p> <p>② <u>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한다.</u></p> <p>③ <u>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,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개정안 16조 통합 이동</p>
<p>제28조(투표 및 절차)</p> <p>① <u>투표는 선관위가 정한 시간에 진행한다.</u></p> <p>② <u>선관위는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게 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한다.</u></p> <p>③ <u>선관위는 투표 종료 마감시간까지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 투표하게 한 후, 투표를 종료한다.</u></p> <p>④ <u>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,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개정안 16조 통합 이동</p>
<p>제29조(개표)</p> <p>① <u>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되면 <신 설>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 수 등을 확인한다.</u></p> <p>② <u>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공개 개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.</u></p> <p>③ <u>당선자에 대한 당선증은 선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7조(개표)</p> <p>① <u>선관위원은 -----즉시 -----확인하고 개표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<u>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, 선관위원은 입후보자별 거수 현황이 제3자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하단에 그 수를 작성한다.</u>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당선관련 조항으로 이동</p> <p>▶ 거수 투표 시 개표 확인방법 명시</p>

<p>제30조(무효투표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무효투표로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. 소정의 투표란을 벗어난 여백에 기표한 것 3. 하나의 투표란에 2인 이상 기표한 것 4. 정해진 투표란에 기표인이 아닌 기타의 도구 및 물건을 이용해 기표하거나 필기구 등을 이용해 의사를 표시한 것 5. (생략)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8조(무효투표)</p> <p>① -----어느 하나 ----- -----<삭제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선관위원의 ----- 2. 여백에 기표하였거나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. 2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. 기표용구 이외에 도구로 기표한 것 5. (현행과 같음) 6.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2.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거나 기표안이 매워진 것으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3. 훼손되었으나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<p>③ 제19조 제항에 의거한 거수에 의한 투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지체를 무효로 본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출 자료의 입후보자 별 거수 현황이 명백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 2. 제출 자료 사진의 거수의 수와 하단에 기재된 찬성반대거권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. 제출 자료 사진의 거수의 수와 선거인명부 상 참석자의 수와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무효표 사례 명시</p> <p>▶ 유효표 사례 명시</p> <p>▶ 거수 투표의 무효사례 명시</p>
<p>제31조(당선자 확정)</p> <p>① 지회장·지부장, 감사는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단, <신설>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재투표를 실시한다. <신설></p> <p>② 운영위원은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하되, 2인 이상이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. 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9조(당선자 확정 및 무투표 당선)</p> <p>① 임원의 당선 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. --, 지회·지부의 장의 경우 ----- -----.</p> <p>감사 및 운영위원은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. <삭제></p> <p>② 임원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,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에서 의결하며,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선을 확정한다.</p> <p>③ 선관위원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.</p>	<p>▶ 조 제상</p> <p>▶ 문장 간결화</p> <p>▶ 현행 32조 병합</p>

<p>제32조(무투표당선)</p> <p>① 지회장·지부장, 감사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와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,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한다.</p> <p>②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31조(당선 확정)에 의해 당선된 지회장·지부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개정안 19조로 병합하여 이동</p>
<p>제33조(기록의 작성 및 보관)</p> <p>① <u>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<신 설> 입후보자 전원의 득표수 및 순위, 당선인의 결정 기록을 작성하여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한다</u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<u>전항의 기록문서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지회·지부 사무처에 보관한다.</u></p> <p>③ <u>해당 지회·지부 사무처는 본회 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선거관련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0조(기록의 작성 및 보관)</p> <p>① <u>선관위원은 -----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본회 사무처에 제출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선관위원 명단</u> 2. <u>입후보자 등록신청서</u> 3. <u>선관위원 회의 증빙자료(회차별)</u> 4. <u>선거공고문 및 공고 게시 증빙자료</u> 5. <u>참석자 서명이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</u> 6. <u>선거진행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</u> 7. <u>선거결과 및 당선자 명단</u> <p>② <u>제1항의 문서 원본은 ----- 사무국-----.</u></p> <p><삭 제></p>	<p>▶ 조 체상</p> <p>▶ 증빙 의무자료</p> <p>▶ 사용용어 통일</p> <p>▶ 중복조항 삭제</p>
<p>제34조(기타)</p> <p>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규정의 해석상 어느 피선거권자 일방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<u>선관위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선거관리 업무가 원만히 종료되지 않을 시 본회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.</u></p>	<p>제21조(기타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선관위원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	<p>▶ 조 체상</p> <p>▶ 용어 통일</p>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부 칙(2025. 0. 00)</p> <p>제1조</p> <p><u>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발생하는 최초 임원 선출 시에 시행한다.</u></p>	